수입관세 감면대상 404품목 확정

재경원, 1월1일부터 시행 … 첨단 · 방위용품 181품목도

96년 1년동안 공장자동화물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이 404개로 95년의 361개에 비해 43개 늘어나게 된다.
첨단 및 방위산업용품으로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품목은 정밀전자 · 항공기산업 등 7개업종 181개로 95년의 340개에 비해 159개가 줄어들게 된다.
또 96년 1월1일부터 수출품제조용 샘플에 대한 관세면제한도가 「10만원이하」에서 「30만원이하」로 확대된다. 대기업이 수입한 관세감면물품을 중소협력기업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에도 관세감면혜택이 승계된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96년 1년동안 적용할 관세감면대상품목을 고시하는 한편 관세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96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공장자동화물품으로 95년도 관세감면대상인 361개 품목중 134개는 재지정하고 161개는 규격을 변경하여 지정했으며 109개는 신규로 지정, 총 404개를 96년도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했다.
또 첨단 및 방위산업용품으로 96년도 관세감면대상인 340개 품목중 181개만 96년도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관세감면 대상품목의 지정과 관련, 공장자동화물품의 경우 인력절감,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등에 필수적인 품목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기존품목중 국내 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삭제했다.
첨단 및 방위산업용품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UR) 보조금 협상의 조치가능 보조금에 해당되어 98년 완전폐지되는 점을 감안, 대폭 축소조정하되 일부 품목은 공장자동화물품중 관세감면대상에 편입시켰다.
정부는 이같은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지정하는 한편 관세감면제도를 대폭 개선, 9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품제조용 견품의 관세면제한도를 「10만원이하의 물품」에서 「3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소액기증물품의 경우 「7만원이하의 물품」에서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대기업이 수입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계열화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에게 양도 · 임대할 경우 관세감면혜택을 승계시켜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외국에서 수리 · 가공돼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재수입기간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에서 수리 · 가공후 1년이내에 재수입되는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해줬으나 96년부터는 「1년이내」라는 기간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해외합작 어획물에 대해 관세율 5%의 할당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100% 관세감면 대상으로 바꾸었다.
관세감면대상물품중 항공기물품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물품이나 장애자용품 · 인공신장기투석액등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물품 등은 관련부처로부터 「용도확인」 또는 「국내생산곤란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서 제외시켜 관세감면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1996/1/22>